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68
------------	-------

발의연월일 : 2022. 1. 18.

발의자 : 임호선 · 강선우 · 홍성국

오영환 · 김민석 · 고민정

박홍근 · 권칠승 · 강병원

최기상 의원(10인)

제안이유

112신고는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그 접수·처리 등 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찰청 예규(「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외에는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긴급한 112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신고자·피해자 등의 위치정보(휴대폰·IP주소 등)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112신고체계의 기반이 되는 112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처리, 112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신고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든지 장애·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누구든지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이 필요한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위력·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112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22조).
- 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112신고를 처리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또는 사용의 제한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 또는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2조).

사. 112신고자가 범죄의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112신고자 전화번호 등 112신고자 정보의 보호·관리 의무를 강화함(안 제11조).

아.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망·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에 필요한 112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통계 및 정보를 저장·관리 및 분석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차. 경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국민에게 112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112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여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2신고”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전화·문자메시지 신고나 그 밖의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고를 통해 범죄신고용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 “112시스템”이란 112신고의 접수·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이관, 공동대응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접수”란 112신고를 받아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112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산망 또는 무선망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출동 경찰관 등에

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란 112신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현장 출동, 현장 조치, 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5. “공동대응”이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112신고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이관”이란 경찰의 소관 사무가 아닌 112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기관에 112신고 정보를 전송하여 넘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경찰력의 활동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위력·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112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112신고 접수·처리 등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판단·전파와 공유·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조정·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업무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시·도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

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① 시·도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해당 112신고 사안에 범죄의 혐의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체 없이 해당 수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112신고 처리를 위한 긴급조치) ① 경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처리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또는 사용의 제한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주소·성별·나이·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해당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동일 신고전화번호에 대한 과거 112신고 접수·처리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요청받아 그 요청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4. 경찰 내부에서 범죄의 예방, 치안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각종

통계를 작성·분석하기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112신고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112신고자 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2조(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긴급한 접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12신고자 또는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112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112신고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112신고를 한 경우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자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제공받으려면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112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112신고자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청장등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등을 해당 112신고에 공동대응하거나 협력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동 현장의 촬영·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망·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방법,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4조(112신고의 기록·보존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처리 상황을 112시스템 입력,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112신고 접수·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범위, 보존기간,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112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제15조(112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2시스템에 입력된 과거 112신고 접수·처리 내역을 조회하여 그 신고내용 및 관련자 정보(112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피해자·가해자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를 112신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112시스템 보안 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112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112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설정 및 보안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112신고 정보의 공유·이관이나 효율적인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통계·정보 분석체계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2시스템과 연계된 통계 및 정보를 저장·관리·분석하는 체계(이하 “통계·정보 분석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

여야 한다.

② 통계·정보 분석 체계의 대상·범위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서비스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112의 날) 국민에게 112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112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제21조(112신고자 포상)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22조(벌칙)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청장등의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